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철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90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30일

발 의 자: 황철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경기문,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춘선, 박철성,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병윤,
이상욱, 이새날, 이원형,
이종태,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최민규, 최호정,
허 훈, 홍국표, 황유정
의원(54명)

1. 제안이유

-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청년공간 유형 및 기능 체계 개편
- 청년공간 유형 및 기능 체계 개편에 따른 공간 명칭 변경

2. 주요내용

- 가.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로 이원화 되어 있는 광역형 청년공간 통합 및 '서울광역청년센터'로 공간유형 명칭 변경(안 제20조 1항)
- 나.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조례상 기능 통합 및 정비(안 제20조 2항)

- 다. 취약계층 청년 지원사업, 대외협력사업, 청년지원사업 공간 지원 등을 포함하여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기능 강화(안 제20조 3항)
- 라. 서울청년센터 기능에서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청년기본법상의 용어 정의를 반영하여 의미 명확화(안 제3조 제8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광역청년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서울광역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
2.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사회안정사업
3. 서울청년센터 운영 지원 및 성과관리·평가
4.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5. 지역단체 및 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대외 협력 사업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및 교류 지원
7.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8. 정책 수립·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9.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지원정보 집적·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
2.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과 사회 안전망 사업
4. 지역단체 및 시설 등과의 연계 및 대외 협력 사업
5. 생활권 기반 청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지원
6.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
7. 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호~7호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 신 설 ></u></p>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호~7호 (현행과 같음)</p> <p>8. “<u>취약계층 청년</u>”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p>
<p>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u>서울특별시 청년허브</u>’, ‘<u>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u>’, 자치구별 ‘<u>서울청년센터</u>’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 ① -----‘<u>서울광역청년센터</u>’, ----- -----.</p>
<p>② <u>서울특별시 청년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u> 2. <u>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 체계 활성화</u> 3. <u>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u> 4. <u>정책 수립·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u> 5. <u>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p>② <u>서울광역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u> 2. <u>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u> 3. <u>서울청년센터 운영 지원 및 성과관리·평가</u> 4. <u>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u> 5. <u>지역단체, 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대외 협력 사업</u> 6. <u>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및 교류 지원</u> 7. <u>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u> 8. <u>정책 수립·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u> 9. <u>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p>③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 2.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3.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4.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지원·교육·평가 5.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③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지원정보 집적·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 2.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4. 지역단체 및 시설 등과의 연계 및 대외 협력 사업 5. 생활권 기반 청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지원 6.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 7. 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p>④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지원정보 집적·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 2.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3.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 4. 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p><삭 제></p>
<p>⑤ (생략)</p>	<p>④ (현행 제5항과 같음)</p>
<p>⑥ (생략)</p>	<p>⑤ (현행 제6항과 같음)</p>